

『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5월 3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5월 31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6월 10일

제1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상하수도사업소장 강 재 용

나. 제안이유

-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하여 경영합리화 도모.
- 장기 투자사업 및 지방채 상환 소요재원 확충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,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.
- 원수 값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으로 인상요인 발생.

다. 주요내용

- 상수도 업종별 요금을 연차별 평균 9.7% 인상(안 별표 2)
- 상수도 구경별 정액요금을 연차별 평균 11.1% 인상(안 별표 4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수도법」,
「지방공기업법」,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
-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.(2013. 3.14)
- 입법예고 : 2013. 4. 5 ~ 4. 25(20일간)(의견없음)
- 구미시 조례규칙심의회위원회 의결.(2013. 5.22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희 철

□ 본 ‘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 은,

- 2007년도 요금 인상 이후 장기간 요금 인상을 하지 않아, 상수도 특별회계 누적 결함액 발생과, 지방채 상환, 장기 투자 사업 재원확보, 한국수자원 공사의 원수 값 인상 등으로,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여, ‘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’ 심의 시 원안 가결되었음.

□ 그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,

- 경북도 市部 중, 상수도 사용료 요금이 최저치이므로, 2013. 8월 고지분 부터 평균 9.7%, 2014. 8월 고지분 부터 평균 9.7%를 인상하려는 계획(안)임.

□ 검토결과

- 지방공기업법 제22조(요금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(요금의 산정방식)에 의거, 요금은 영업비용에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총괄원가를 산정하였으며,

- 2011년도 기준으로 상수도 원가(영업비용) 구성 비용 비율을 보면, 원·정수비 62.75%, 감가상각비 14.75%, 인건비 8.92% 등으로서, 원·정수 비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.
- 또한, 한국수자원공사가 2013. 1. 1일부터 전국적으로 원수값 4.9%를 인상하여 상수도 사용료 인상 요인을 발생하게 하였음.
- 2013년 이후, 104억원의 지방채 상환, 20년 이상 노후관로 (167km) 개체에 420억원, 장기투자사업의 필요성, 79억원의 누적 결함액 해소와,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,
- 금번, 상수도 사용료 요금 인상을, 2개 년도에 걸쳐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 략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